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강간등)

[인천지방법원 2011. 5. 27. 2010고합834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윤희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서영섭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, 고지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